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7. 7 선고 2019나415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7. 7 선고 2019나415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21 선고 2019가단537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6. 2

판결선 고 2020. 7. 7

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21. 선고 2019가단537 판결

주문

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잡종지 976㎡ 중 별지 1도면 표시 20, 21, 22, 23,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2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단층건물을 철거하고,위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잡종지 976㎡ 중 별지 2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4.4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(측량)감정축탁 결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강릉시 C 잡종지 40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릉시 D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는데,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별지 1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2㎡를 침범하여 건물부지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나.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2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, 위 부분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차영욱 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

판 사 판사 홍유정

별지